

2025년 제3차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제3차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8.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5년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참여자격 : 2025. 7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상주한 아래의 기업(본점 도내)

* 유급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준(단, 자원봉사자, 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은 미포함)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제외 대상 불임3 참고

- 다. 지원분야 :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2 지원방법

- 가.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총 5년 이내, 총 1억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3천만원 이내, 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단, 2025년도 1, 2차 공고 선정중으로 최종선정 이후 잔여한도 내에서 선정지원 함

구분	최대지원기간	도비 보조금		자부담
		연간 지원한도	최대지원한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내 최대 2년	3천만원	6천만원	10%
사회적협동조합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5천만원	1.5억원	20%

○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시점의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 신청 후 약정체결 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지원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

○ 최대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3년 이내 2년간,
사회적기업 5년 이내 3년간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는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당해연도 충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및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나. 자부담 적용

○ 사업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10~20%까지 자부담을 유지하여야 함(단,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20%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10% 적용

※ 예시) 사회적기업 대상 총사업비가 50백만원인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 사업비가 40백만원,
자부담 금액은 1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업비(50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기업부담)
도비 보조금(40백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10백만원)	

다. 혁신타운 상주기업 사정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

라. 사용불가 항목 : 붙임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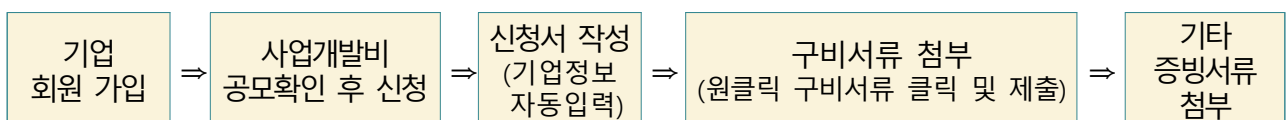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7. 28.(월) ~ 8. 13.(수) 18:00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시스템상 '신청서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

나.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시스템 등록 절차



※ 시스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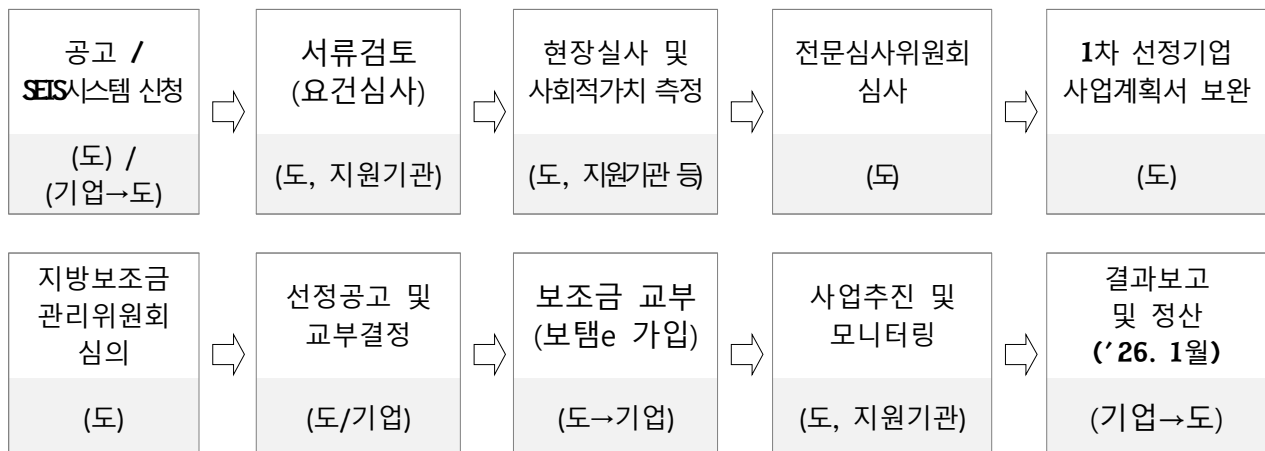
사업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때 · 곳 : 2025. 8. 7.(목) 14:00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3층 중회의실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56-8127)에 사전 신청필요
- 참석대상 :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상주기업 등
- 주요내용 : 지원사업 안내, 신청방법, 평가기준 <사회적가치지표(SVI)> 등
- 주관·주최 : 충청남도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5

선정절차

가. 선정절차



※ 서류검토, 현장실사 결과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 제외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6

신청서 및 증빙서류(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필요 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별도 시스템 제출
-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① 사업신청서
- ②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2개 이상 타업체 비교견적서 필수 첨부)
 - ※ 예산운용계획 작성 시 비교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 세부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각 예산별)
-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포털의 ‘소셜클래스’ 온라인 교육 이수 내용(5시간 이상)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등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⑦ 임팩트 투자 교육 참여확인서 ※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코칭프로그램 사업(임팩트 투자 기업컨설팅 등)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사업 참여기업(해당사항 있을 경우)
-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 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⑩ 사회적 가치 측정 신청서, 측정지표 서식 3, 6, 14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자료
 - ※ 사회적기업 포털(<https://www.seis.or.kr>) > 공지사항 >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 ⑪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상주기업 확인서 ※ 경제진흥원 발행
 - 구비서류 첨부 메뉴상 법인등기부등본 항목에 같이 첨부

7 기타사항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임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심사를 위하여 신청한 제반 내용의 일체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추후 해당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민·

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 고발 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8 문의처

- (상담 및 컨설팅, 공모설명회 참석 신청)

기관명	전화번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56-8126~7 (경영컨설팅, SVI)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관련 문의

기관명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도) 담당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3

- (가점)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기관명	전화번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 혁신타운 입주기업 임팩트 투자기업 컨설팅 사업

	구 분	일정	수행주체
1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충청남도 공고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접수)	7. 28.(월) ~ 8. 13.(수)	도 (기업)
2	공모 상담회	8. 7.(목)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기업 현장실사(SVI 포함)	8. 14.(목) ~ 8. 21.(목)	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	검토보고서 작성 및 SEIS 입력	~ 8. 27.(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도
5	전문가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기간 중 1일)	9. 2.(화) / 9. 3.(수)	도
6	1차 심사결과 통보(예정)	9. 5.(금)	도 → 기업
7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예정)	~ 9. 9.(화)	기업 → 도
8	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예정) (기간 중 1일)	9. 12.(금) ~ 9. 26.(금)	도
9	선정공고 및 통보(예정)	9. 29.(월)	도 → 기업
10	보탬e 가입 및 교부신청 (온라인교육 이수 / 보탬e 계좌(카드)개설, 교부신청서 제출)	9. 30.(화) ~ 10. 2.(목)	도 → 기업
11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급(예정) * 보탬e 사용 / 기업 보탬e에서 교부신청 필요	10. 13.(월) ~ 12월 까지	도 ⇄ 기업 (사업 추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사 : 평일 기준(실제 실사가능 기간)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보탬e 사용

- ▶ 보조금계좌는 집행관리를 위하여 사업개발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등록
- ▶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은행에서 보탬e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등록
(보탬e 보조금전용카드등록 및 집행등록 요청 방법(예치형) 매뉴얼 참고)

붙임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사업계획 (40)	사업자원의 필요성	10점	· 사업개발비 자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자원의 파급효과 등 - 사업개발비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정 성 평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 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문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기업 성장성 (3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M 14번 지표	정 성 평 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	20점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	20 16 12 8
사회 가치 (30)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5점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5 4 3 2 1
	사회적 목적 실현	10점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M 6번 지표	정 성 평 가
		15점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M 3번 지표 전체	
가점 (10)		10점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탁월' 우수 기업 (공고년도 직전 2년 이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자율경영공시 인증기업 사업장(전년도) · 임팩트 투자 교육 참여기업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코칭프로그램 사업 (임팩트 투자 기업컨설팅 등)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사업	3 2 5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붙임3 참여제외 대상 및 사용불가항목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제외 대상

- ❶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❷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확인
- ❸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 사업간 지원 목적,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❹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통 사실을 통보
- ❺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격으로 최대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예시)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된 경우에도 최대지원기간 만료로 신청 불가
- ❻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사용불가 항목

❶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❷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❸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 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❹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❺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❻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❼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❽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❾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능한 분야는 지원가능

❿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⓫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협동조합		☐ 1년차 ☐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신청기업	기관명				대표자(주민번호)	(-)		
	소재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혼합형 ☐ 기타형							
* 전체유급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별지)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비용	사업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도비·시군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원		☐ 홍보 ☐ 광고		원	
	☐ 기술개발		원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원	
	☐ 특허출원		원		☐ 예술공연기획		원	
	☐ 교육훈련비		원		☐ 홈페이지제작		원	
				☐ 쇼핑몰제작		원		
				☐ 기타()		원		
중전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전문인력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전문인력 지원	~					
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명 기재 (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 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㉓, ㉔ 중 택일)
 - ㉓ 사회적기업 포털의 '소셜클래스'온라인 교육 이수 내용(5시간 이상)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㉔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등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임팩트 투자 교육 참여기업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처별 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 및 거래 금지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사업분야 구분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2) 사업성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 3) 최초지원일
 - 사회적협동조합: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사회적협동조합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 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2025. 4월)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2025. 12월)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 수 증가, 지역 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50%)	2차교부(50%)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80~90%)	자부담 (c=10~2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20%)은 반드시 유지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 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 ☐ 예 | ☐ 아니오 |
| 2. 임금 등 체불이 있나요 | ☐ 예 | ☐ 아니오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 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회적 가치 측정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 유형	작성요령1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2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3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작성요령4 참조		인증(지정)유형	작성요령4 참조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 가능)
-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5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4년)를 의미
-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① 인증 사회적기업, ② 예비 사회적기업, ③ (사회적)협동조합 중 택1

2. 설립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외부 운영 (제품· 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 가치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일체

- 2024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24년 12월 임금대장 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일체
- 조직내부활용: 근로자 복리후생비 지원내역, 2024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시설비 투자 내역(2024년 내 집행내역)
 - 조직외부활용: 지역사회 재투자 관련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	-----------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증빙서류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2023년, 2024년의 혁신노력 및 결과